

제338회 임시회
2015. 3. 13.(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3. 13.(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2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2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3월 4일

-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조운희)

1. 제안사유

- 민간위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사무 신설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 위탁사무 삭제 및 이관,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개정】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문개정】

- 민간위탁의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제2조)
 -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 내용 삭제
-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 민간위탁의 남용방지 및 투명성·책임성 제고
- 근거법령 개정 : 수탁사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규정(안 제8조)
 - 사무관리규정 제1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사무의 삭제】 안 [별표]

-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창조전략담당관) : 대행사업으로 시행
-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기업유치지원과) : 대행사업으로 시행
-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미래산업과) : 사업종료
-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무(일자리창출과) : 개별조례에 근거

【그 밖의 개정사항】 안 [별표]

- 사무 이관
 - 인터넷방송 운영 : 정보화담당관 → 공보관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의 위임과 위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사무를 신설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위탁사무 삭제 및 이관과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첫째, 조례명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변경,
둘째, 위탁사무 신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셋째, [별표]의 위탁 사무 중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창조전략 담당관),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기업유치지원과),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미래산업과),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무(일자리창출과)를 삭제하고,
넷째, 인터넷방송운영의 담당부서를 정보화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안 제2조제4호 재계약의 정의에 있어서 “기존 수탁기관”만을 재계약의 정의로 할 경우,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시행일이 즉시일 경우 3~4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필요한 위탁사업은 의회승인, 공고, 모집, 선정 등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 3. 4. / 윤은희 의원

○ 수정이유

– 안 제2조제4호 재계약의 정의에 있어 “기존 수탁기관”만을 재계약의 정의로 할 경우, 수탁기관이 변경 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수정하며,

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이 즉시일 경우 개정 조례 공포 이후 3~4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추진하는 위탁사무는 의회승인, 공고, 모집, 선정 등의 사전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위탁사무의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부칙 제1조에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2조제4호에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등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본 개정조례안 대로 시행될 경우 개정안 제2조제4호 재계약의 정의에 있어서 “기존 수탁기관”만을 재계약의 정의로 할 경우, 수탁기관이 변경 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수정하며, 개정안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개정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이 즉시일 경우 개정 조례 공포 이후 3~4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필요한 위탁사업은 의회승인, 공고, 모집, 선정 등의 사전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위탁사무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부칙 제1조에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1일부터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안 제2조제4호에

“기존 수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u>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p>	<p>(개정안과 같음)</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u>기존 수탁기관</u>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p>제2조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u>수탁기관</u>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p>제3조(적용범위) ①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국가사무의 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 (개정안과 같음.)</p>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위탁 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p>	<p>제4조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조 (개정안과 같음.)</p>

개 정 안	수 정 안
<p>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9조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 (개정안과 같음.)</p>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1조(사무편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0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 (개정안과 같음.)</p>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3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 (현행과 같음)</p> <p>제15조 (현행과 같음)</p>	<p>제12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 (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 (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u>다만,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한해서는 시행일을 2015년 9월 1일부터 한다.</u></p>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
----------	-----

제출연월일 : 2015년 2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간위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사무 신설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 위탁사무 삭제 및 이관,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개정>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조문개정>

- 민간위탁의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제2조)
 -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 내용 삭제
-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4조제3항)
 - 민간위탁의 남용방지 및 투명성·책임성 제고
- 근거법령 개정 : 수탁사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명의표시 규정(안 제8조)
 - 사무관리규정 제1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탁사무 삭제> 안 [별표]

-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창조전략담당관) : 대행사업으로 시행
-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기업유치지원과) : 대행사업으로 시행
-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미래산업과) : 사업종료
- 맞춤형 인턴제 운영사무(일자리창출과) : 개별조례에 근거

<그 밖의 개정사항> 안 [별표]

- 사무 이관
 - 인터넷방송 운영 : 정보화담당관 → 공보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 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 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국가사무의 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사무에 대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선정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5항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하여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 중 “수탁기관에서”를 “수탁기관의”로 한다.

제10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언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를 “처리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사무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투자유치과	1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③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④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⑤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⑥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로 한다.

⑦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⑧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⑨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⑩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⑪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⑫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한다.

⑬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위탁사무명 (제4조제4항 관련)

소 관	위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법규
공보관	· 인터넷방송 운영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방자치법 제104조
투자유치과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 (다만,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임대사무를 포함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일자리기업과	· 기능경기대회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전략산업과	· 충청북도 공예품경진대회 운영	도내 공예단체·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 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조(적용범위) 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u>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p> <p>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p> <p>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① 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국가사무의 위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생략) 1. ~ 3. (생략) 4. <u>기타</u>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p> <p>② 도지사는 <u>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u>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도지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p>	<p>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p> <p>② 도지사는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u>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같음한다.</u></p> <p>④ <u>제1항에 따라</u> 도지사가 민간위탁 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p>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u>선정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u>제6조의 규정에 의한</u>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u>선정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에 따라</u>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u>제6조에 따라</u>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도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p>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7조 (생략)</p> <p>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 ② (생략)</p> <p>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u>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u>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u>수탁기관에서</u>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9조 (생략)</p>	<p>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u>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u>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u></p> <p><u>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u></p> <p>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u>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u>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도지사는 <u>수탁기관의</u> 사무처리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9조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지휘·감독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u></p> <p>② 도지사는 <u>수탁기관에 대하여</u>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u>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1조(사무편람) ① (생략)</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u>얻어야</u> 한다.</p>	<p>제10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u></p> <p>② 도지사는 <u>수탁기관에</u>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u>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제11조(사무편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u>받아야</u>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u>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제13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u>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u>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u>처리에 대하여</u>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에 따라</u>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 (생략)</p>	<p>제14조 (현행과 같음)</p>
<p>제15조 (생략)</p>	<p>제15조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